

# 대구광역시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5. 7. 16.

기획재경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발 의 자: 박왕규 의원 외 5명(박종길, 이진환, 권숙자, 서보영, 최홍린)
- 발의일자: 2025. 7. 4.(금)
- 회부일자: 2025. 7. 4.(금)
- 상정 및 의결: 제31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(2025. 7. 16.)

## 2. 개정이유

- 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에 장기간 헌신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 이용에 대해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동차를 할인 대상으로 추가함(안 제6조제4항)

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
  -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23조
  -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2조
  - 「대구광역시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」
- 비용추계서: 비대상
- 입법예고(2025. 7. 4. ~ 7. 14.) 결과: 의견 없음.

## 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10년 이상 국가 안보에 헌신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복지증진 및 예우 확대를 위해 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을 감면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-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제4항에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의 20%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2조제3항에 국가보훈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체육시설의 이용요금을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(2022. 9. 20.)하였고, 국가보훈부에서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(2025. 2. 26.) 하였던 바, 조례 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-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간 국가에 헌신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 강화로 군 복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고, 지역사회 내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
## 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특이사항 없음

## 7. 심사결과: 원안가결